



##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[경기의료공업(주)]

1. 관련 :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

2. 우리 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“경기의료공업(주)(제700호)”에서 제조·판매한 의료기기(혈관내튜브·카테터, 제허12-60호)에 대하여 영업자 회수를 보고함에 따라 2017. 10. 17자로 “영업자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품목명 (허가번호)	모델명	제조번호	회수사유	회수등급	업체담당자 (연락처)
혈관내 튜브·카테터 (제허12-60호)	SafeOne 20G	16F003	사출이물 확인	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 52조제2항제3호	황기숙 (031-987-2365)
	SafeOne 22G	16G019 16G005			
	SafeOne 24G	16Q004			

끝.



